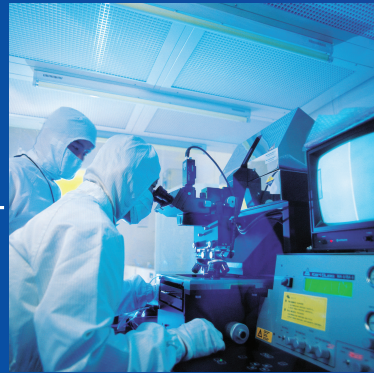


2005년 7월부터

#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5. 7.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목 차 >

## I. 변경되는 주요제도

- (1)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 3
- (2)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제도 시행 / 3
- (3)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 시행 / 4
- (4)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 5
- (5) 영주체류자격 취득범위 확대·완화 / 5
- (6)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 6
- (7)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 6
- (8) 인터넷신문 등록제도 신설 / 7
- (9)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마련 / 7
- (10)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 / 8
- (11) 화학비료차손보전제도 폐지 / 8
- (12) 우체국 토요일 휴무에 따른 이용안내 / 9
-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9
- (1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10
- (1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 확대 / 10
- (16)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 및 사용 확대 / 11
- (17)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 11
- (18)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 12
- (19)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최소화 및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 12
- (20) 퇴직연금제 도입 / 13
- (21) 국민임대주택, 분양시기 조정 / 14
- (22) 선박 입출항 및 화물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 15
- (23) 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 허가제로 전환 / 15
- (24) 참전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 16
- (25)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16
- (26) 국외여행 허가 절차 개선 / 17
- (27) 태풍경보를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각 3단계로 세분 / 17
- (28)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 / 18

## II.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

1. 재정경제부 / 21
2. 교육인적자원부 / 29
3. 과학기술부 / 31
4. 통일부 / 33
5. 외교통상부 / 35
6. 법무부 / 36
7. 국방부 / 40
8. 행정자치부 / 42
9. 문화관광부 / 44
10. 농림부 / 46
11. 산업자원부 / 51
12. 정보통신부 / 52
13. 보건복지부 / 55
14. 환경부 / 59
15. 노동부 / 64
16. 여성가족부 / 70
17. 건설교통부 / 71
18. 해양수산부 / 76
19. 공정거래위원회 / 80
20. 국가보훈처 / 85
21. 국세청 / 87
22. 관세청 / 88
23. 조달청 / 93
24. 병무청 / 95
25. 기상청 / 98
26. 문화재청 / 99
27. 산림청 / 101
28. 중소기업청 / 107
29. 특허청 / 108



# I. 변경되는 주요제도

## (1)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외환제도 혁신팀 (☎ 02-2110-2497)

㉮ 국민들의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을 줄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재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005. 7.1)

-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제 할 목적으로 50만불(지급기준) 이내의 주거용 주택으로 취득 허용 범위를 확대
- 최근 해외에 체제하는 내국인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 목적의 주거용 주택 취득 수요가 늘고 있다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
- ※ 종전에는 본인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미화 30만불 이내의 주거용 주택만 취득이 가능했으며, 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되었음

## (2)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제도 시행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기획단 (☎ 02-3703-3787)

㉮ 학자금대출제도를 현행 이차보전 방식에서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금년도 2학기부터 시행합니다. (2005. 7월)

- 기존 방식은 정부재원 조달의 한계로 수혜대상 확대가 곤란 하였으나, 동일 규모의 재원으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보증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현행 제도를 지속할 경우는 정부의 이차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되어 결국 대출지원 학생수 감소가 불가피 하지만, 개편되는 제도하에서는 현행보다 1.5배 이상(30만명→50만명)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학생들이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을 정부가 하게 되므로 현재 은행에서 학부모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짐
  - 특히 학부모의 신용문제로 인해 대출에서 제외된 학생들도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개편되는 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기간 : 2005. 7.13 ~ 23

⚡ 이를 통해 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학비가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기책임하에 학비를 조달하고 취업후 본인이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의식을 고취하면서 부모세대의 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3)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 시행

과학기술부 우주기술개발과 (☎ 031-436-8608)

- ⚡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주발사체를 제작하여 국내에서 발사한 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를 우리땅에서 발사할 예정입니다.
  - 우주발사체는 발사시 위험성이 있으며, 만일의 사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발사시 반드시 소정의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한 후 허가를 득한 후 발사하도록 조치
- ⚡ 우주발사체를 국내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만일의 사고시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 12.1)

## (4)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외교통상부 여권과 (☎ 02-2100-7597)

### ㉮ 사진전사식 일반여권이 발급됩니다. (2005. 8.31)

- 우리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
- 우리 국민의 출입국 수속 간편화 등 편의도모
-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비자면제 추진 환경조성

## (5) 영주체류자격 취득범위 확대·완화

법무부 체류심사과 (☎ 02-503-7101)

### ㉮ 투자외국인이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외국의 우수과학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05. 9월)

- 종전에는 미화 5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5인 이상의 내국인 고용을 창출한 투자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저투자금액을 미화 200만불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 과학·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 외국인 투자자와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 02-3703-4482)

⚡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공무수행중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였습니다. (2005. 11.18)

- 백지신탁된 주식은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매각하여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하고
- 해당 공직자는 신탁재산 운용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금융기관도 해당 공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임기 2년의 위원 9인으로 구성(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 3인 추천)

⚡ 동 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수행의 중립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02-3703-4791)

⚡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매주 토요일 휴무제로 바뀌었습니다. (2005. 7.1)

- 단, 경찰·소방·교정·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 또한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1시간 범위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8) 인터넷신문 등록제도 신설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 02-3704-9340)

㉡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005. 7.28)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언론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신문도 등록 하도록 하되, 기존 업자는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등록 하도록 함
-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 증대 추세로 인해 인터넷등록을 법제 화할 필요성이 생김
- 실질적 언론기능을 하는 인터넷 신문에 대하여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9)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마련

농림부 소득정책과 (☎ 02-500-2103)

㉡ 쌀협상/DDA협상이후 쌀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쌀 농가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 기존의 쌀 관련 직불제를 통합 개편하여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05. 7.1)

- 친환경농법과의 소득차이분을 지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지급단가 인상에는 한계가 있어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고정형직불제로 개편하고, 쌀소득보전금은 농업인 납부금제를 폐지하는 한편, 쌀값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개편
- 고정형직불은 쌀값 하락, 타작물 재배, 휴경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변동직불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 단가를 차감한 금액 지급

㉡ 향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농가는 일정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시) '04년 수확기 쌀값 대비 5% 하락할 경우, 쌀재배 농업인은 목표가격의 98.5%를 수취

## (10)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

농림부 가축방역과 (☎ 02-500-1934)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이 강화됩니다.  
(2005. 12월)

- 1998년에 국내 수의학제를 선진국 수준인 6년제로 개편하였으나, 이수 과목수·시간 등이 국내대학보다 월등히 적은 외국대학의 졸업생에게도 동일하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
-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국내 수의사 시험에 응시 가능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국내 수의인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1) 화학비료차손보전제도 폐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 02-500-1807)

㉮ 농협을 통하여 비료를 싼 가격에 공급하게 하고 그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화학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가 완전 폐지됩니다. (2005. 7.1)

- 비료값이 영농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면서 지원 효과가 줄어들고,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등과 상충되며 비료 과다시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완전 폐지

㉮ 정부는 화학비료차손보전을 폐지하는 대신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유기질비료의 지원을 화학비료 보조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번 조치로 화학비료는 시장자유화가 되어 단기적으로는 비료가격 인상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비료산업 및 유통의 효율성을 촉진하여 비료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다양하고 품질좋은 비료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
  - ※ 유기질비료 확대  
: ('04)600천톤, 210억원 → ('05)700, 245 → ('06계획)1,200, 420
  - ※ 비료값이 영농비에 차지하는 비중  
: ('75)18.9% → ('85)10.9 → ('95)6.2 → ('02)6.8

## (12) 우체국 토요일 휴무에 따른 이용안내

정보통신부 경영기획실 경영지원과 (☎ 02-2195-1125)

㉮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에 따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토요일에 전면 휴무하게 되지만, 우체국은 시·군·구 지역을 총괄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업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2005. 7.1)

- 우체통을 통한 우편물 수집과 국제특급(EMS), 우체국택배, 빠른우편물의 배달은 토요일에도 계속적으로 제공
- 아울러, 우체국예금·보험 등 우체국 금융창구는 토요일 휴무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되, 전국 620여곳의 365코너에서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
- 토요일휴무와 관계없이 우편업무는 [www.epost.go.kr](http://www.epost.go.kr)에서, 금융업무는 [www.epostbank.go.kr](http://www.epostbank.go.kr) 등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연중 무휴 서비스 제공

##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과 (☎ 02-750-1250)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5. 7.27)

- 최근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서비스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
-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1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 02-503-7565)

㉡ **현행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005. 7월)**

● 부양의무자 범위

〈변경전〉

- 수급권자를 부양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변경후〉

- 수급권자를 부양할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 **그동안에는 부양의무자인 조부모(손자녀)의 소득·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되었으나**

- '05.7월 이후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보호가 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1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재활지원과 (☎ 02-503-8500)

㉡ **현행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 이·미용원 등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2005. 7.1)**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확충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확충
- 편의시설 설치율에 맞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체감도 제고

●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령에 따라 2~4%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

㉡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6)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 및 사용 확대

환경부 대기총량제도와 (☎ 02-2110-7932)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만을 수도권대기관리권역안에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2005. 7.1)

- 이를 위반하여 VOCs 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를 동 지역내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용진군(용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VOCs는 질소산화물(NOx)등과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대기권내 오존(자극성 및 독성이 매우 강하여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악화)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37개 물질중 벤젠 등 일부물질이 그 자체로서도 발암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함

㉮ 이로 인해 수도권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오존 등 대기오염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7)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02-503-9742)

㉮ 그간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였으나, 처벌규정을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체불사업주의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였습니다. (2005. 7월)

㉮ 이로 인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의 처벌희망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체불임금의 조기청산,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8)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02-503-9742)

㉮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을 경우 체불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005. 7월)

- 단, 체불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음

※ 적용제외사유

: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상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체불된 임금·퇴직금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상당한 경우 등

㉮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9)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최소화 및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 02-503-9732)

㉮ 최저임금법상 연소자 임금감액, 양성훈련생·수습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여 수습근로자(3개월 미만) 감액적용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2005. 9월)

- 생산성, 업무 숙련도 차이 등을 이유로 한 감액은 일리가 있으나, 그 기준은 연령 또는 훈련생 여부가 아니라 수습 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감액적용기간은 현행 적용제외 인가기준인 '3월 이내'로 하고, 감액률은 시행령으로 규정 (10%)

㉮ 그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감액 적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 일반적인 외국의 예와 같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되
    - 노동강도, 근로시간 등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
- ※ 우리나라와 일본만 적용제외

- 감액률은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오히려 감축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 및 노사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정선에서 결정 (시행령)
- 산업현장의 노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임금교섭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07.1월부터 시행

**㉡ 최저임금 적용주기를 9.1일~다음해 8.31일에서 1.1일~12.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주기와 회계연도의 일치로 예산책정 및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반영이 원활해지고,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전 행정지도가 용이해지도록 함
- 다만, 최저임금 결정·고시 시기는 현행을 유지하여 일반사업장의 임금인상 결과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20) 퇴직연금제 도입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추진단 (☎031-425-2763)

**㉡ 현행의 퇴직금제도에 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2005. 12월)**

- 퇴직금제 및 퇴직연금제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중 선택이 가능함
-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 마련에 기여하고
- 기업도산시 근로자들의 퇴직금수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금제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모두 도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됨
-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음

- 이와같이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한 것은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개인퇴직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 은퇴시에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서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이 빈번해져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커짐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필요
- 직장이동시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적용됨(퇴직연금과 같음)

**(2) 국민임대주택, 분양시기 조정**

건설교통부 주택기획과 (☎ 02-504-7402)

㉡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입주자 모집) 시기를 종전 입주전 17~13월(공정 40~60%)에서 입주전 12월(공정 70%)로 조정하였습니다. (2005. 7.1)**

- 그동안의 선분양 방식으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수요자의 관심이 저조
- 계약금(200~300만원 수준)을 미리 마련함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계약을 저조
- 서민들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연간 이자부담 약 30만원 수준)

㉡ **이로 인해 입주자가 주택의 품질과 주변환경 등을 실제로 보고 계약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목돈 마련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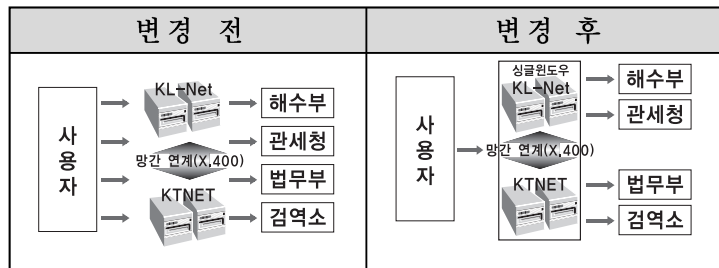


## (22) 선박 입출항 및 화물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 (☎ 02-3674-6663)

㉫ 선박을 통한 수출입 화물 신고시 종전 4개 기관에 개별 신고하던 선박입출항 및 화물관련 서류 제출이 1회 신고로 해결됩니다. (2005. 9월)

- 종전, 신고자가 선박입출항, 승객/선원명부 및 화물반출입 현황의 서식을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에 개별 신고하였으나, 서식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 체계를 구현하여 1회제출로 각 기관 신고업무가 해결



㉫ 이와 같은 항만물류 싱글윈도우 체제는 '05. 7월부터 8월 까지 2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정부예산, 인력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 (23) 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 허가제로 전환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 02-3674-6963)

㉫ 육상양식(종묘생산) 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 기존에는 신고만으로 육상양식이 가능함에 따라 무분별한 신규진입으로 인하여 어업재해나 연안 환경오염발생 우려 제기
- 이에 따라, 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허가제로 전환
  - ※ 구체적인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은 관련법에서 위임한 어업허가 및신고등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에 규정할 예정

㉫ 이러한 조치로 육상양식어업이 적조(赤潮)방제 및 해양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게 되어 어업재해나 연안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최근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 참전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 02-2020-5168)

### ㉮ 참전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위하여

-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지역을 종전 16개 전투지역에서 23개 전투지역으로 확대하였고,
- 국방부장관이 확인하던 의용경찰과 경찰의 6·25전쟁 참전
- 사실을 실제 지휘·통솔기관이었던 경찰청장이 확인토록 하였으며,
-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연령(65세)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토록 하고,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장제집행인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005. 7.1)

㉮ 이로 인해 적용 전투지역 확대, 참전사실 확인기간 단축, 민원절차 간소화 등으로 참전유공자의 권익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5)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 02-2020-5165)

###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정·시행으로 동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이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5. 7.30)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등에 대하여 교육 및 취업지원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장기저리의 대부 실시
-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 기타 양로·양육지원, 국·공립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이용 등을 실시

㉮ 이로 인해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신 특수임무 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26) 국외여행 허가 절차 개선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 2752)

### ㉮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1년 범위내의 허가로 개선하였습니다.

-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내의 허가로 개선하여 복수여권발급 가능

### ㉮ 인터넷에 의한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해졌습니다.

- 귀국보증제도의 폐지로 허가시 구비서류의 간소화 및 배낭 여행 등 빈번한 해외여행의 증가로 국외여행허가를 인터넷으로 허가하며,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전송, FAX,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출국 전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취소 신청

### ㉮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국외여행허가 및 허가기간 조정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 인천공항(외교통상부 연락사무소)의 여권발급업무 개시로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허가 및 허가기간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민원편의 제공

### ㉮ 국외여행허가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허가하던 것을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지방병무청 어디에서든 허가 가능

## (27) 태풍경보를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각 3단계로 세분

기상청 예보국 예보관리과 (☎ 02-836-3156)

### ㉮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 두 단계로 발표하던 태풍특보를 재해의 심각성과 효율적 방재업무 지원을 위하여 태풍경보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각 3단계로 세분하여 발표합니다.

- 바람이 강한 경우는 바람 3·2·1급, 비가 많은 경우는 비 3·2·1급으로 발표(1급이 3급 보다 강함)
- 태풍이 통과할 때 예상되는 총강우량 개념을 도입
- 바람의 경우는 세계기상기구의 태풍의 강도 분류를 기준으로 삼아 세분화
- 태풍으로 인해 해일이 예상될 때는 해일특보를 별도 발표
- 특보 사항의 효과적 전달을 고려하여 현상별 단계를 3단계로 세분

### ㉮ 이로 인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바람과 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져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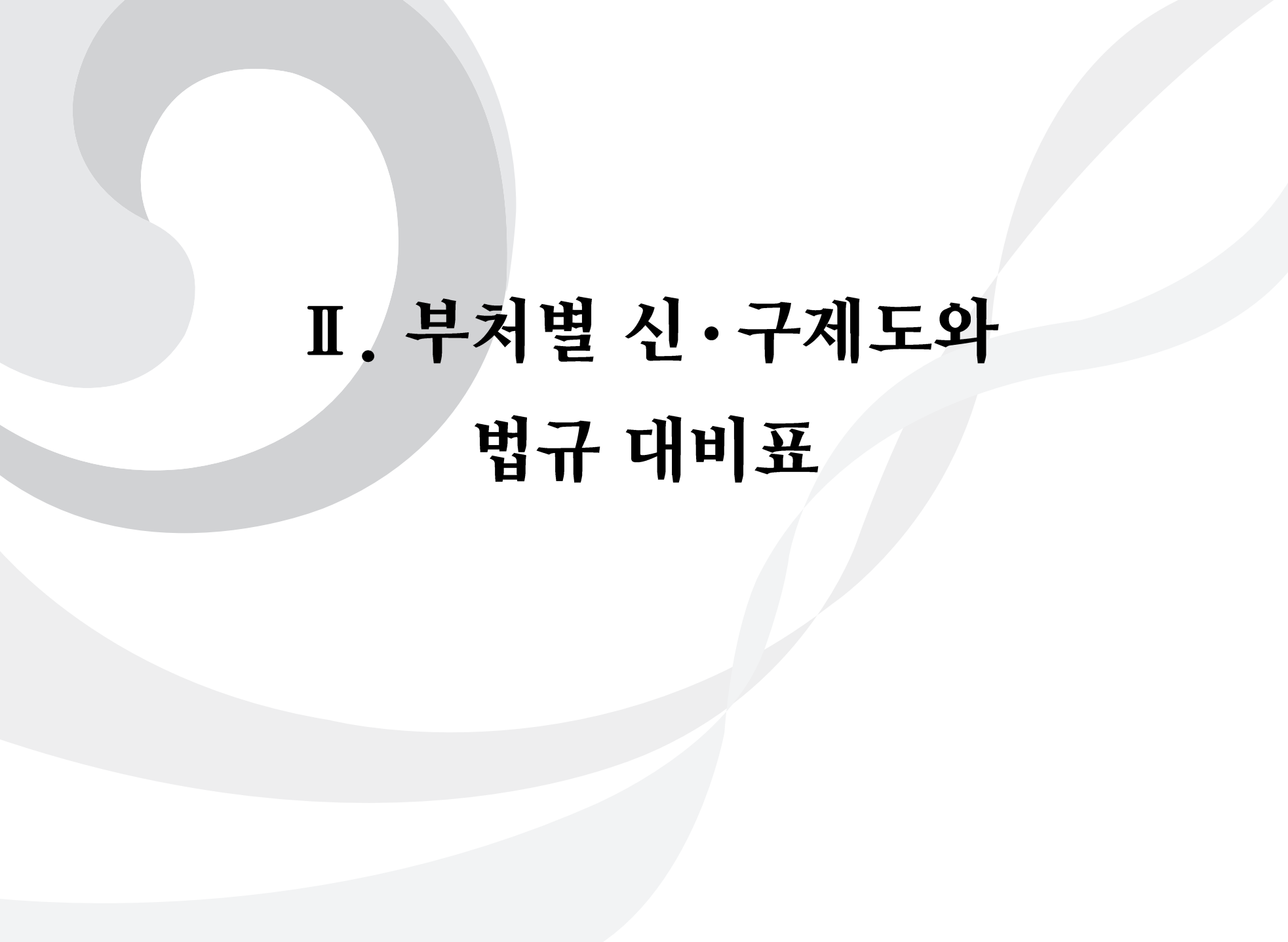
## (28)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5271)

⚡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5. 7.1)

-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고려」인삼, 「보성」녹차 등)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
-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등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을 제한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의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Ⅱ.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

## 재 정 경 제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로 발주할 분기별 계획만을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발주계획</li> <li>:물량·규모 및 예산액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 뿐만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분기별 발주계획을 포함</li> <li>○ 입찰결과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도 정보공개 범위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 계약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 계약변경 내용 및 사유 등</li> </ul> </li> </ul>	국가계약법시행령 (2005. 7월 예정)	회계제도과 ☎ (02) 2110-2385
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요건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li> <li>- 계약일로부터 품목조정율(또는 지수조정율)이 5% 이상 상승</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li> <li>- 입찰일로부터 품목조정율(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 상승</li> </ul> </li> </ul>	국가계약법시행령 (2005. 7월 예정)	회계제도과 ☎ (02) 2110-2385
3	주택재개발지구 주민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재개발지구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15년에 걸쳐 분할납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4% →3%로 인하</li> </ul>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 (2005. 7)	국유재산과 ☎ (02) 2110-236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재해피해자의 국유재산 임대료 면제	<신설>	○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임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 임대료를 면제할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2005. 7)	국유재산과 ☎ (02) 2110-2367
5	국유재산 임대시 전자입찰 의무화	○ 국유재산 임대시 경쟁 입찰을 실시할 경우 계시판 등에 공고	○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을 통해 입찰공고·개찰· 낙찰 선언을 하도록 하여 임대과정을 투명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 (2005. 7)	국유재산과 ☎ (02) 2110-2367
6	국유재산 임대시 보증금 예치제도 신설	<신설>	○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간 임대 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료의 50%이내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함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2005. 7)	국유재산과 ☎ (02) 2110-2367
7	국유재산 임대료 산정시 탄력성 제고	○ 재산가액에 법정 임대료 율(공시지가의 1~5%)을 곱하여 임대료를 산정	○ 법정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2회이상 유찰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인근 임대료 시세 등을 감안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 (2005. 7)	국유재산과 ☎ (02) 2110-236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8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보유기간별 의제원천징수 - 중도매도일 : 의제원천징수 - 이자지급일 : 이자 전액에 대한 원천징수	○ 보유기간별 원천징수 - 중도매도일 및 이자지급일에 채권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5. 7. 1)	소득세제과 ☎ (02) 2110-2166
9	지급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보완	〈신설〉	○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 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에 추가	소득세법 (2005. 7. 1)	소득세제과 ☎ (02) 2110-2166
10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 인하	○ 19/100	○ 15/100	소득세법 (2006. 1. 1)	소득세제과 ☎ (02) 2110-2166
11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법인세법시행령 (2005. 7)	법인세제과 ☎ (02) 2110-217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2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변경	<p>〈의제원천 징수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의 중도매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도자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채권가격에 전가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li> </ul> </li> <li>○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보유자에게 채권의 전기간분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자기 보유 기간분에 대해 서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li> </ul> </li> </ul>	<p>〈실제보유기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을 중도에 매도한자·최종보유자 모두 자신이 채권을 보유한 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li> <li>○ 채권을 중도에 매도시 원천징수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과 법인간 거래 : 매도법인</li> <li>- 법인과 개인간 거래 : 법인</li> </ul> </li> </ul>	법인세법 (2005. 7)	법인세제과 ☎ (02) 2110-2170
13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신설〉	○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별표 1) (2005. 7)	세제실소비 세제과 ☎ (02) 2110-219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4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명확화	○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제	○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물적시설의 개념 :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및 시행규칙 제11조의3 (2005. 7)	세제실 소비세제과 ☎ (02) 2110-2194
15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 범위 확대	○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 범위 확대 - 자가 어획물 운반선 -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 관한특례규정 제15조 (2005. 7.1)	소비세제과 ☎ (02) 2110-2195
16	코스닥 신규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시행	<신설>	○ 코스닥에 신규상장하는 벤처(중소) 기업의 소득금액 30%를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법인세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2005. 7) ※ 6월 임시국회상정중 (의결·공포시 7월시행)	세제실 ☎ (02) 2110-215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8	종합부동산세 도입·시행	<p>&lt;신설&gt;</p> <p>○ 지방세로 보유세 과세</p> <p>- 건물 : 재산세(7월)</p> <p>- 토지 : 종토세(10월)</p>	<p>○ 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p> <p>- (1차)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과세</p> <p>- (2차)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인별합산하여 일정액초과분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p> <p>※ 주택은 토지·건물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과세</p> <p>※ 7월 : 재산세(건물, 주택1/2)</p> <p>9월 : 재산세(토지, 주택1/2)</p> <p>12월 : 종합부동산세</p>	<p>종합부동산세법 (2005. 1. 5)</p> <p>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005. 5. 31)</p>	<p>부동산 실무기획단 ☎ (02) 2110-2935</p>
19	중소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유예	<p>○ 외부감사 대상인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전체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구축운영·적용 대상</p>	<p>○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는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구축·운영 적용대상에서 제외</p>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2005. 6. 30)</p>	<p>증권제도와과 ☎ (02) 2110-2436~7</p>
20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확대	<p>○ 수은이 프로젝트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방식으로 대출·보증을 활용</p> <p>○ 한국수출입은행의 6월 미만 여신은 중소기업도 자본재 등으로 한정</p>	<p>○ 지원방식을 대출·보증에서 출자방식으로 확대</p> <p>○ 한국수출입은행의 6월 미만 여신에 대한 제한 폐지</p>	<p>한국수출입은행법 (2005. 9. 1)</p>	<p>개발협력과 ☎ (02) 2110-2579</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21	비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 투자한도 증액	○ 비금융기관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 : 3억불	○ 기업 등 비금융기관이 해외에 금융·보험업 투자를 통해 할부금융제공 등 수출확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종전의 건별투자한도를 폐지	외국환거래규정 제9-11조	외환제도 혁신팀 ☎ (02) 2110-2497
22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	○ 미화 100만불이내 ※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 또는 100만불이내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자유로운 해외투자를 보장 ※ 개인은 300만불이내,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 또는 300만불이내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외환제도 혁신팀 ☎ (02) 2110-2497
23	자산운용회사 등의 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 자산운용회사: 한은신고 수리후 취득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취득 불허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간접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 및 부동산 투자회사(REITs)의 해외 부동산 취득제한을 완화 ※ 자산운용회사의 한은신고수리절차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부동산취득을 허용 (한은신고수리절차도 면제)	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	외환제도 혁신팀 ☎ (02) 2110-249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24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 본인의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미화 30만불 이내의 주거용 주택</li> <li>○ 금액 상관없이국세청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 본인 외에 배우자의 해외 2년이상 체재목적 이 입증되는 경우 주거용 주택취득을 허용함으로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편법·불법적으로 이뤄지던 해외부동산 취득을 현실화함</li> </ul> </li> <li>※ 금액도 종전 30만불(지급기준)에서 50만불로 확대하고 20만불 초과시에만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제도 완화</li> </ul>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외환제도 혁신팀 ☎ (02) 2110-2497
25	지급증빙서류 제출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물품수입 등에 따른 지급을 위해서는 전별로 지급증빙서류 제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들의 거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에 따른 지급증빙서류 제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의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증빙서류 제출을 면제</li> </ul> </li> <li>※ 전년도 수출입 규모가 각각 1억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li> </ul>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외환제도 혁신팀 ☎ (02) 2110-2497

##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정부신용보증 방식 학자금대출 시행	○ 이자차액 보전방식	○ 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학비가 없어 대학을 포기 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자금대출제도 전면 개편 - 정부신용보증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배수까지 대출을 확대하게 되어 대출인원 및 규모 확대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2005. 7)	학자금대출 기획단 ☎ (02) 3703-3787~8
2	방과후학교 제도 도입	<신설>	○ 방과후 보육, 특기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 도입  ○ 연구학교 지정 운영 및 모델 개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2005. 2학기)	교육현장 지원단 ☎ (02) 2100-6271
3	학교 환경위생 관리제도 도입	<강화>	○ 학교신축시 새학교증후군 원인물질 측정 의무화  ○ 기존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 학교내 환경위생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2005. 2학기)	학교체육보건 급식과 ☎ (02) 2100-639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도입</li> <li>○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노동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운영 및 우수기업 시상</li> </ul> </li> </ul>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005. 7)	학자금제도 개선팀 ☎ (02) 2100-6405
5	민자유치(BTL)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학교 노후교사 개축 및 신설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 사업규모 : 3조 1천억(72건)</li> <li>- 학교신설 178교, 노후학교 개축 99동, 체육관 235동, 대학기숙사 27동</li> </ul> </li> </ul>	사회기반시설에대 한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2005. 7)	시설기획 담당관실 ☎ (02) 2100-6271

# 과 학 기 술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 수정·보완	○ 2002년에 작성된 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19, 중분류 160, 소분류 1023개)	○ 기존 분류체계에 신기술, 융합기술 출현 등 새로운 분야를 추가·보완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하반기)	과학기술정보과 ☎ (02) 2110-3773
2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신설〉	○ 대덕연구단지외 그 인근지역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벤처생태계를 조성, 10년내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국가신성장동력 창출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운영 - 특구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연구소기업 설립 허용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5. 7. 28)	대덕연구개발 특구기획 추진팀 ☎ (031) 436-8654
3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신설〉	○ 우주물체의 등록제 신설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제도 신설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2005. 12.1)	우주기술개발과 ☎ (031) 436-860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예산확보-後기획제도</li> <li>○ 기술료중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율 35%</li> <li>○ 연구원 인센티브 성격의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7%로 계상</li> <li>○ 연구실내 안전강화를 위한 별도 비용 불인정</li> <li>○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 참여시 연구비 부담액중 현금부담율 30%이상</li> <li>○ 매년 연차평가 실시</li> <li>○ 각 부처별 연구개발관련 서식 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기획-後예산 제도 확립 - 100억원 이상 연구사업 예산편성 전 기획 의무화</li> <li>○ 인센티브 지급율 50%로 확대</li> <li>○ 연구활동진흥비 인건비의 15%로 확대</li> <li>○ 연구실 안전관리비 신설</li> <li>○ 기업 현금부담율 15%이상으로 완화</li> <li>○ 다년도사업의 경우 연차평가 폐지</li> <li>○ 부처간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식통일</li> </ul>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05. 6.1)</p>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05. 6.1)</p>	<p>연구조정총괄 담당관실 ☎ (02) 2110-3737</p>

## 통 일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통일부와 관세청간 차량 운행 민원절차 통합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와 관세청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민원인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운행</li> </ul>	(2005. 7.1)	남북교역과 ☎ (02) 3703-2448
2	수송장비 운행승인 절차 간소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송장비 별로 구분하여 운행승인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5-10일로 단축</li> <li>○ 운행승인 유효기간은 부정기 1년, 정기 2년으로 대폭 확대</li> <li>○ 자동차의 범위에 자주식 건설기계를 포함</li> </ul>	남북한간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및승 인기준에관한고시 (2005. 6.13)	남북교역과 ☎ (02) 3703-2448
3	남북출입 절차 간소화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차량을 위한 전용차선제 운영</li> <li>○ 방북차량 확인 절차 간소화</li> <li>○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CIQ 검사후 별도 군검색 없이 남북관리구역 통행</li> </ul>	남북한교역대상 물품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2005. 6.30)	남북교역과 ☎ (02) 3703-244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인 참여 개방 : 총 18인중 3인 이상</li> <li>○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li> <li>○ 남북한왕래 수시방문증명서 발급근거 및 수시방북증소지자 방문시 신고제 운영</li> <li>○ 남북교역의 포괄승인 근거 마련</li> <li>○ 방문증 발급취소, 협력사업자 승인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규정(과거 시행령에 규정)</li> <li>○ 신고·보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부과근거 마련</li> </ul>	남북교류협력법 (2005. 5.31)	경협제도팀 ☎ (02) 3703-2454

## 외 교 통 상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 사진부착식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사진을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 위·변조 방지</li> </ul> </li> <li>○ ICAO 규정에 부합하는 기계판독 여권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li> <li>-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신여권 재발급)</li> <li>- 8세미만 동반자 병기제도 폐지(1인 1여권)</li> </ul> </li> </ul>	여권법시행령및 시행규칙 (2005. 8)	여권과 (법규계) ☎ (02) 2100-7597

## 법 무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 전문화 유도	<신설>	○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제도 도입	변호사법 (2005. 7.28일 시행)	법무과 ☎ (02) 507-6523
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절차 변경	○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의 승인으로 가능  <신설>	○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 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공소제기 등 종국처분 후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 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2005. 8.27)	검찰제3과 ☎ (02) 503-7055
3	주5일근무제 관련 수용자 토요접견	○ 둘째, 네째 주 토요일은 휴무일로 교정시설 소재 지와 다른 시·도 등 원 거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당해 주간 평일에 접견하지 않은 민원인에 한하여 접견 실시	○ 2005. 7. 1일부터 전국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접견이 변경되어 실시 - 매주토요일 접견 실시 - 접견대상 :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주중접견을 하지 못한 수용자의 배우자, 배우자 의 부모, 계존비속, 형제자매 - 거리, 지역 구분 없이 가족간의 접견권 확대보장  ○ 기존 원거리접견규정 폐지,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등)접견은 실시하지 않음  ○ 외부통근 및 전일근로 작업수행자는 평일 접견이 불가능하므로 접견대상자 제한없이 접견 실시	수용자 접견 업무지침 (2005. 7)	보안제1과 ☎ (02) 503-708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외국인등록신청 대리허용	○ 외국인등록신청의 경우, 종전에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음	○ 체류외국인의 편의 증진 및 민원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신청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시행 규칙제34조 제1항 (2005. 9월 시행)	체류심사과 ☎ (02) 503-7101
5	국민의 배우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면제	○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했음	○ 국내 장기체류가 예상되는 국민 및 영주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체류편익을 증진	출입국관리법시행 령 제23조 제2항 (2005. 9월 시행)	체류심사과 ☎ (02) 503-7101
6	신원보증 공증제도 폐지	○ 출입국관리업무와 관련 각종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중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음	○ 체류외국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류허가절차 간소화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	출입국관리법시행 규칙제77조제6항 (2005. 9월 시행)	체류심사과 ☎ (02) 503-710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7	영주자격 취득대상 확대 및 완화	○ 투자외국인의 경우, 미화 5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 영주자격을 부여	○ 투자외국인의 경우, 종전 미화500만불이었던 최저 투자금액을 미화200만불로 하향 조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 우수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 등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별표1 (2005. 9월 시행)	체류심사과 ☎ (02) 503-7101
8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제도 도입	○ 신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신청을 위하여 사무소를 방문하고,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다시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의 처리절차 간소화 및 민원혼잡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시 서면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제4항, 제17조의2 (2005. 9월 시행)	입국심사과 ☎ (02) 503-7097
9	“1社1제도” 폐지	○ 하나의 사업체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 중소기업체에 대한 외국인력수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1社1제도”를 폐지함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4의 2조 제3항 (2005. 9월 시행)	입국심사과 ☎ (02) 503-709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0	외국인 유학생·연수생에 대한 소속 대학 관리 의무 강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지정</li> <li>○ 동 직원은 외국인 유학생·연수생의 학적 변동 등 사유 발생시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장에게 신고</li> </ul>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 (2005. 9 시행)	입국심사과 ☎ (02) 503-7097
11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등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FAX를 통해서만 증명 발급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민원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등 3종</li> <li>- 접속처 : 대한민국 전자정부 (<a href="https://www.egov.go.kr">https://www.egov.go.kr</a>)</li> <li>- 이용요령 : 금융기관 이용 공인인증서로 본인 신분 확인 및 수수료 전자 지불 후 민원인 PC로 출력</li> </ul> </li> </ul>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개시일 (2005.07.15 경)	출국관리과 ☎ (02) 503-7103



## 국 방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국방민원 포탈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및 인터넷 민원 처리 시스템 개별 운영</li> <li>○ 서류민원은 처리과정 민원인이 확인 곤란</li> <li>○ 전자민원은 국방부 홈페이지의 일부 메뉴로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민원포탈 홈페이지 별도구축</li> <li>○ 모든 민원 처리과정을 민원인 휴대폰 E-mail로 통지 / 인터넷 실시간 검색</li> <li>○ 민원도착, 처리기한 경과·임박 민원을 민원담당자에 자동 알리는 기능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li> </ul>	(2005. 8)	민원과 ☎ (02) 748-6888
2	육군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운영 (부서관이상 전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인이 발급 신청시 육군본부(병적관리과)로 이송 후 발행, 송부 (직접방문, 발급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와 육군본부 민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교부토록 시스템 구축</li> </ul>	(2005. 7.1)	민원과 ☎ (02) 748-6888
3	국유재산 일반 공개 경쟁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군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 관리관이 직접 매각 공고, 등록 입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청의 지정정보처리장치인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www.unbind.co.kr)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매각 재산 공고, 입찰, 등록, 낙찰함</li> </ul>	국유재산법 제33조 제2항 (2005. 1.1)	관재보상과 ☎ (02) 748-583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예비군 훈련시 동미참 군의장교 응급조치요원 활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미참 군의장교를 입영훈련(2박3일) 대신 예비군 훈련장 응급조치요원으로 4일간 출·퇴근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군 훈련 부대 군의관 미편제에 따른 응급 조치 제한요소 해소</li> <li>- 군의장교 효율적 활용</li> </ul> </li> </ul>	'05 예비군 훈련지침 (2005. 7.1)	예비전력과 ☎ (02) 748-5245
5	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승인 전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장승인 : 문서로 신청/ 시간 과다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장승인 절차 : 4단계 (보훈지청 → 보훈처 → 국방부 → 현충원)</li> <li>- 행정소요시간 최소 7일 이상 소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장신청 및 승인 전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장신청 절차 간소화 : 유가족 → 국방부</li> <li>- 신원조회 전산화 : 1일 소요</li> </ul> </li> <li>○ 안장신청 승인, 영현정보시스템 일괄처리로 업무 능률 향상</li> </ul>	국립 묘지령 (2005. 7.1)	인사근무과 ☎ (02) 748-5107
6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연금법 시행(1960. 1.1) 전인 1959. 12.31 이전에 중사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유족 포함)에게 퇴직급여금 지급</li> </ul>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5. 7.1)	직업보도과 ☎ (02) 748-6632

## 행 정 자 치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지역민방위대 동원권의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확대	○ 소방방재청장의 위임에 의한 동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재난 발생 시 지역민방위대 동원명령 발령 가능	민방위기본법 제22조 (2005. 6.25)	안전기획팀 ☎ (02) 3703-5902
2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 복무편성기간 단축	○ 2년	○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복무 편성기간을 1년으로 단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 (2005. 6.25)	안전기획팀 ☎ (02) 3703-5902
3	민방위대 동원 공고방법 개선	○ 방송,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 계 시판	○ 민방위대 동원공고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2005. 6.25)	안전기획팀 ☎ (02) 3703-5902
4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 월2회 토요일 휴무실시 ※ 2·4번째 토요일 휴무 - 단, 경찰·소방·교정·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 공무원은 제외	○ 매주 토요일 휴무실시 - 단, 경찰·소방·교정·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 공무원은 제외  ○ 점심시간 탄력적 운영 -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1시간범위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조정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05. 7.1)	공무원단체 복무팀 ☎ (02) 3703-479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주식백지신탁제시행	<신설>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의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여야 함 - 백지신탁대상 주식하한가액은 하반기중 대통령령으로 결정 예정	공직자윤리법 (2005. 11.18)	공직윤리팀 ☎ (02) 3703-4482
6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한 단속 강화	○ 입간판 등이 반복·상습적으로 설치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하여 즉시 제거함.	○ 반복·상습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즉시 제거 가능하게 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2제1항 (2005. 6.24)	주민제도팀 ☎ (02) 3703-4868
7	음란·퇴폐적 내용의 광고물과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물에 대한 벌칙 신설	○ 음란·퇴폐적 내용등의 광고물에 대한 벌칙 규정 미비	○ 음란·퇴폐적 내용의 광고물과 내국인용카지노·복권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일으키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 제2호 (2005. 6.24)	주민제도팀 ☎ (02) 3703-4868

# 문 화 관 광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언론중재위의 관할 범위 확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위의 관할 대상에 포함됨</li> <li>○ 언론중재 위원회에 대해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 도입</li> </ul>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동법 제32조 (2005. 7. 28)	문화미디어 산업진흥과 ☎ (02) 3704-9340
2	정기간행물 등록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간 신문, 통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주2회 이하 발행하는 간행물 중 유가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은 주된 사무실이 소재한 시·도에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li> </ul>	신문의자유와기능 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005. 7. 28)	문화미디어 산업진흥과 ☎ (02) 3704-9340
3	인터넷신문 등록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li> </ul>	신문의자유와기능 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2005. 7. 28)	문화미디어 산업진흥과 ☎ (02) 3704-934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li> <li>○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li> </ul>	국가기술자격법 (2005. 하반기)	체육국 스포츠 여가산업과 ☎ (02) 3704-9853
5	스포츠산업 육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서비스업 사업공모전 개최 및 스포츠산업 분야별 “스포츠산업대상” 시상</li> <li>○ 스포츠산업 성장 촉진과 종사자 사기진작</li> </ul>	(2005. 하반기)	체육국 스포츠 여가산업과 ☎ (02) 3704-9853

## 농 립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 중앙회 회장은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및 총회 의장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 중앙회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업경영은 대표이사 전담, 교육지원사업은 전무이사를 신설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소관사업별로 이사회 내에 소이사회를 두도록 하여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농업협동조합법 (2005. 7. 1)	협동조합과 ☎ (02) 500-1694
2	농협중앙회 부가의결권 도입	○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1조합 1표행사	○ 조합원 수에 따라 중앙회 총회(회장, 감사선거제외) 및 대의원 선출시 1~3표의 의결권 행사 ( 2,000명미만 1표, 2,000~3,000명미만 2표, 3,000명이상 3표 )	농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2005. 7. 1)	협동조합과 ☎ (02) 500-1694
3	조합경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조합이 자율적으로 상임 이사 도입여부 결정  ○ 조합이 자율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실시  ○ 상임조합장 연임 무제한	○ 일정규모 이상조합(자산 2,000억원이상)은 상임 이사 의무도입 ※ 단, 법시행일 2년 이후('07.7.1)에 새로이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은 1,500억원이상으로 규정  ○ 일정규모 이상조합(자산 500억이상)은 조합장 임기중 1회 외부회계감사 수감 의무화, 기타 조합은 대의원 1/3이상 청구시 조합장 임기중 1회 외부 회계감사 수감  ○ 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2005. 7. 1)	협동조합과 ☎ (02) 500-169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직선조합장 선거관리	○ 조합장 선거관리는 자체 선관위에서 담당	○ 지역조합의 직선조합장 선거관리는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위탁	농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2005. 7.1)	협동조합과 ☎ (02) (500-1694)
5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강화	○ 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은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 품목조합은 2억원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 품목조합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기준미달조합은 2년간 유예)	농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2005. 7.1)	협동조합과 ☎ (02) (500-1694)
6	조합간 사업연합 제도화	○ 조합간 공동사업연합 법적근거 부재	○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도화 - 농협법에서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 및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해 회계기준 제정고시	농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2005. 7.1)	협동조합과 ☎ (02) (500-169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7	조합 배당제도 개선	○ 잉여금이 있는 경우 출자에 대한 배당을 사업이용실적 배당보다 우선	○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우선하도록 법에 명시 - 총 배당액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용고 배당	농업협동조합법및 조합정관례 (2005. 7. 1)	협동조합과 ☎ (02) (500-1694)
8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행사요건은 조합원 300인 또는 5/100이상의 동의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행사요건을 100인 또는 3/100으로 완화하는 등 조합의 운영공개 활성화	조합정관례 (2005. 7. 1)	협동조합과 ☎ (02) (500-1693)
9	화학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 폐지	○ 화학비료에 대한 농협 구매가격과 농업인 판매 가격과의 차액결손을 재정에서 사후 보전	○ 화학비료의 투입절감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를 위해 2003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보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왔으며, 2005. 7. 1 공급분부터 완전 폐지	비료관리법 (2005. 7. 1)	친환경 농업정책과 ☎ (02) (500-1807)
10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확대,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	○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사용량 2만ℓ 이상,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는 분기별, 사용시한은 2개월로 하고 있음	○ 농업용 면세유류 거래투명성 확보 및 부당사용 예방을 위해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의무사용 대상자를 직전연도 사용량 2만ℓ 이상에서 1만ℓ 이상으로 확대하고,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시기를 분기별 발급에서 월별발급으로 개선하고, 사용시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 석유류에대한부가 가치세영세율및 면세적용등에관한 특례규정 (2005. 10. 1)	농업기술 지원과 ☎ (02) (500-1791) ※국무회의상정 ('05.6.2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제도 시행	○ 논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보전금 - 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시 농가 소득 안정에 한계	○ 기존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금을 고정형 직불과 변동형직불제로 개편하여 목표가격(17만원)과 산지쌀값 차액의 최소 85%를 보전 - 법 시행시기에 맞춰 7월부터 대상농가 등록을 받고 준수 의무 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금년 12월에 고정형직불금을 지급하고, 금년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하여 내년 4월경에 변동직불금 지급	쌀소득등보전에관한법률 (2005. 7. 1)	소득정책과 ☎ (02) (500-2103)
12	양정제도 개편	○ 추곡약정수매제 - 정부수매를 통한 가격 통제  ○ MMA로 도입되는 수입 쌀은 전량 가공용으로 사용	○ 비상시에 대비한 정부의 공공비축제로 개편 - 시가로 수매하여 시가로 방출 - 비축량, 매입가격 등 세부시행방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수립  ○ '04년 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동의가 하반기중 될 경우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대비 - 수입쌀에 판매이익금 부과 - 명예감시원 확대(1만명) 등 원산지표시 철저단속 -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강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양곡관리법 (2005. 7. 1)	식량정책과 ☎ (02) (500-1755)
13	중양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신설>	○ 중양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2005.7.1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함 - 개설자가 시장여건에 따라 도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5. 7. 1)	유통정책과 ☎ (02) (500-182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4	인삼류 수분 제조 및 검사기준 완화	○ 인삼류 수분함량기준을 다양하게 규정 - 홍삼, 태극삼 및 백삼 : 14% - 미삼류 및 기타삼류 : 12%	○ 인삼류 수분함량기준이 일괄 15%로 완화되었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2005. 6.11)	채소특작과 ☎ (02) (500-1869)
15	원형태극삼 제조기준과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마련	<신설>	○ 원형태극삼 제조 및 검사기준 마련으로 신제품 상품화 가능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2005. 6.11)	채소특작과 ☎ (02) (500-1869)
16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강화	○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받은 경우 수의사국가 시험에 응시 가능	○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수의사 면허를 받는 경우에만 국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 가능	수의사법 제9조 (2005. 12.1)	가축방역과 ☎ (02) (500-1934)
17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 업무 이양	○ 시·도지사가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 업무 수행	○ 시장·군수가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 업무 수행	수의사법 제21조 (2005. 12.1)	가축방역과 ☎ (02) (500-1934)
18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권한 조정	○ 농림부장관이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하여 기구·장비의 대국민 지원을 명할 수 있음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하여 기구·장비의 대국민 지원을 명할 수 있음	수의사법 제27조 (2005. 12.1)	가축방역과 ☎ (02) (500-1934)

## 산 업 자 원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	〈신설〉	○ 안전인증대상이 되는 중고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검사를 받아야 판매가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2 (2005. 10)	제품안전 정책과 ☎ (02) 507-7434
2	전기용품 안전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 (2005. 10)	제품안전 정책과 ☎ (02) 507-7434
3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 임의규정	○ 안전인증기관은 전기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 제4항 (2005. 10)	제품안전 정책과 ☎ (02) 507-7434

# 정 보 통 신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신설>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는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05. 7. 27)	정보보호 정책과 ☎ (02) 750-1250
2	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지정	○ 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미지정	○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 범위로 한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전파법 (2005. 7. 1)	전파방송 총괄과 ☎ (02) 750-2414
3	전력선통신설비의 허가기준 완화	○ 전선로를 이용한 9kHz이상의 모든 통신설비는 허가를 받고 운용	○ 전력선통신설비 중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큰 설비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설비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	전파법 (2005. 7. 1)	전파방송 총괄과 ☎ (02) 750-2414
4	정보통신 인증표시 미부착기기의 벌칙 완화	○ 정보통신 인증을 필한 기기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경우 벌금을 부과	○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 등을 필한 기기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	전파법 (2005. 7. 1)	전파방송 총괄과 ☎ (02) 750-241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전파정책 결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신설>	○ 전파관련 정책의 전문성·신뢰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파이용 중·장기계획 등 전파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 운영	전파법 (2005. 7.1)	전파방송 총괄과 ☎ (02) 750-2414
6	무선국 개설 제도 개선	○ 무선국 개설신고서 처리기 간 30일  ○ 간이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업무를 우체국장에게 위임	○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무선국 개설신고서 처리기간을 14일로 단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간이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업무를 체신청장에게 위임	전파법시행규칙 (2005. 7.1)	전파방송 총괄과 ☎ (02) 750-2414
7	사용승인 주파수의 이용 현황 조사	<신설>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에 사용된 주파수에 대하여 이용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파법시행령 (2005. 7.1)	전파방송 총괄과 ☎ (02) 750-2414
8	소출력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명시	○ 소출력 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6월~1년	○ 소출력 (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 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	전파법시행령 (2005. 7.1)	전파방송 총괄과 ☎ (02) 750-241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9	무선국 변경검사의 면제범위 확대	○ 무선국 개설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검사 대상	○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당해기기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검정 또는 등록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 무선국 변경검사를 면제하도록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익 증진	전파법시행령 (2005. 7.1)	전파방송 총괄과 ☎ (02) 750-2414
10	우체국 토요일 휴무에 따른 이용 안내	○ 우편창구 : 시·군·구 단위 우체국 및 일부 소규모 우체국  ○ 금융창구 : 우편창구와 동일  ○ 우편물 배달 : 특급, 소포, 빠른우편물 및 일간신문 등	○ 우편창구 : 시·군·구 단위 우체국  ○ 금융창구 : 전면 휴무  ○ 좌 등	우정사업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 (2005. 7.1)	우정사업본부 경영지원과 ☎ (02) 2195-1125
11	우편분야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신설>	○ 1회 5,000원 이상 현금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위한 현금영수증 도입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2005. 7.1)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과 ☎ (02) 2195-1282

## 보 건 복 지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장애인보장구의료급여 확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으로 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휠체어(2,090,000원) 보장구의료급여 실시</li> </ul> </li> <li>○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스쿠터(1,670,000원) 보장구 의료급여 실시</li> </ul> </li> <li>○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형외과용 구두(220,000원) 의료급여 실시</li> </ul> </li> </ul>	의료급여법시행 규칙 (별표 2) (2005. 6)	의료급여과 ☎ (02) 503-5392
2	아파트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함(단,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li> </ul>	장애인·노인·임 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2005. 7.1)	장애인복지 심의관실 재활지원과 ☎ (02) 503-850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3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벌꿀 - 당류(엿류 제외),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 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류는 제외	○ 소분을 허용할 경우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나, 타원료를 혼합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당류,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기존특수영양식품), 레토르트제품, 전분, 장류, 식초 및 인삼제품에 대하여 소분을 금지하고 그 외 모든 식품에 대하여 소분을 허용하여 소분업신고 대상을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2005. 8)	식품정책과 ☎ (031) 440-9115
4	식품영업허가(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기준 개선	○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 - 신규 : 28,000원 - 변경 : 26,5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 영업허가 사항의 변경 및 신고 변경사항의 수수료를 현행 일률적으로 26,500원을 적용하던 것을 현장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26,500원으로 유지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치 않은 대표자변경 및 상호변경 등에 대하여 9,3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변경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	식품위생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별표16) (2005. 8)	식품정책과 ☎ (031) 440-9115
5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제도개선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임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축소하여 영업자 교육을 현실화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식품위생법 제 27 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항 (2005. 8)	식품정책과 ☎ (031) 440-911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6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체계 개선방안으로 검토해온 전문병원 제도 도입에 앞서 특정질환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병원의 시설, 인력 등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li> <li>○ 전문병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1년동안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병원이라 함은 특정진료과목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거나 특정질환 등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li> </ul> </li> </ul>	(2005. 7)	보건의료 정책과 ☎ (031) 440-9104
7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기관 : 공공의료기관 중 지방공사의료원(34개), 적십자병원(6개),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최근 2년간 무료진료실적을 시,도지사로부터 인증 받은 의료기관)</li> </ul> </li> </ul>	(2005. 5)	공공보건 정책과 ☎ (031) 440-913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임의계속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8% → 9%로 상향 조정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표준소득월액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 의 8%이었음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9%로 상향 조정됨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이미 '98년에 9%로 조정되었고, 지역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99년 4월부터 3%를 적용하고 매1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 2005년 7월에 9%로 조정됨('98년 법개정)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 (2005. 7)	연금정책과 ☎ (02) 504-1101

# 환 경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방지시설업 등록 제도 운영 및 관리소관부서 변경	○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업무 소관부서 변경 - 환경부장관[유역(지방)환경청장] → 시·도지사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관한법률 (2005. 7)	환경경제과 ☎ (02) 2110-6682
2	친환경상품 보급확대	○ <자율구매> 공공기관은 환경마크상품 과 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의 경우 예외 인정)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공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 (2005. 7)	환경경제과 ☎ (02) 2110-6678
3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 등록 및 취소 등 업무	○ 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	○ 시·도지사(지자체로 이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내지제18조 (2005. 7)	환경기술과 ☎ (02) 2110-6725
4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 등 업무	○ 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	○ 시·도지사(지자체로 이양)	환경관리대행기관 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6조 (2005. 7)	환경기술과 ☎ (02) 2110-672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백두대간보호 지역지정 (핵심·완충구역) 및 행위제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자연환경보전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 보전·증식, 임업시험연구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보수,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 일정 조건하의 광산개발,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li> </ul> </li> <li>○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 등 산림경영 관련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시설, 일정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개축, 전력·석유 또는 가스공급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li> </ul>	<p>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2005. 1)</p> <p>- 보호지역 지정 ('05. 하반기 시행예정)</p>	<p>자연정책과 ☎ (02) 2110-6739</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6	섬지역 자연공원내 거주 주민 개인묘지 설치 허용지역 확대	○ 자연공원 자연취락지구에 도서지역 거주민의 장사를 위한 개인묘지 설치	○ 섬지역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거주 주민 개인 묘지 설치 허용(지역 확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함)	자연공원법 제18조 (2005. 10.1)	자연자원과 ☎ (02) 2110-6752
7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신설>	○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승인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로 국토난개발 및 환경훼손 최소화 ('05.7월 예정)  ○ 도시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1만㎡이상 유통설비, 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친환경적 도시조성('05.7월 예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시 사전환경성검토로 환경친화적 민투자사업추진 ('05.10월 예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2005. 7)	국토환경 보전과 ☎ (02) 2110-6706
8	환경친화형 도료의 VOC함유기준설정 등	<신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안에 도료를 공급 또는 판매 하는 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서 규정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동 권역에 공급·판매할 수 없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30조및시행규칙 제39조 별표8 (2005. 7.1)	대기총량 제도과 ☎ (02) 2110-793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9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 자연공원 자연취락지구에 도시지역 거주민의 장사 를 위한 개인묘지 설치	○ 부산광역시 정밀검사 시행 확대 - '05.7.1일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에 등록 차량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7의3에 서 정하는 검사대상 차량이 경과한 자동차는 정 밀검사 수검 - 미수검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정밀검사 시행에 관한 부산광역시 조례 제4006호 (2005. 7.1)	교통환경 관리과 ☎ (02) 2110-6858  부산시 환경보전과 ☎ (051) 888-6744
10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시행	○ 낙동강수계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광역시 · 시지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 추가	낙동강·금강·영 산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2005. 8.1)	유역제도과 ☎ (051) 2110-6837
11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신설>	○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2005. 7.1)	토양지하수과 ☎ (02) 2110-6765
12	오염토양의 위해성평가 제도	<신설>	○ 토양오염 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지자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 하여 정화범위 및 시기를 조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2005. 7.1)	토양지하수과 ☎ (02) 2110-676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3	토양오염 신고제도	<신설>	○ 토양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토양오염 물질을 누출·유출한 때에는 관할지자체에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2005. 7.1)	토양지하수과 ☎ (02) 2110-6765
14	오염토양의 투기금지	<신설>	○ 오염토양의 투기 및 정화과정에서 누출·유출 행위 금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2005. 7.1)	토양지하수과 ☎ (02) 2110-6765
15	간이상수도 인가권한 변경	○ 간이상수도(일일 공급량 20톤이상 500톤미만)를 설치·폐지시 시·도지사의 승인	○ 시·도지사 승인없이 설치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폐지 가능	수도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6조 (2005. 10)	수도정책과 ☎ (02) 2110-6875
16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미설치시 이행명령 주체 변경	○ 중수도 설치 혹은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주·의무 미이행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이행명령	○ 이행명령권자 변경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수도법 제11조, 제11조의2	수도정책과 ☎ (02) 2110-6875
17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가권의 지방이양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음	○ 시·도지사는 인가 없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특별대책지역은 종전유지	하수도법 제6조 (2005. 10.1)	생활하수과 ☎ (02) 2110-6899



## 노 동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신설>	○ 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에게 임금·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됨 - 단, 천재·사변, 법률상·사실상 도산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에는 지연이 자율의 적용이 제외됨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2005. 7)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02) 503-9742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체불임금을 기한내 청산하지 않으면 처벌	○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여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됨	근로기준법 제112조제2항 (2005. 7)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02) 3148-6315
3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실시	<신설>	○ 임금체불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지방노동 관서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임금체불 사건중 해당근로자가 원할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하여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실시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2005. 7)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02) 503-973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최소화 및 최저임금 적용 주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 6개월 미경과 근로자에 대해 10% 감액 적용</li> <li>○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생,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li> <li>○ 적용주기 : 9.1일~익년 8.31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자 감액적용 및 양성훈련생 적용제외 폐지 → 수습근로자(3개월 이내) 감액적용으로 통합</li> <li>○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 ('07.1.1일부터 적용)</li> <li>○ 1.1일~12.31일로 변경</li> </ul>	최저임금법 제5조, 제10조 (2005. 9)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02) 503-9732
5	퇴직연금제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신설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별로 기존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중 선택 가능(노사합의 필요)</li> <li>-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중 택일가능</li> </ul> </li> <li>○ 개인퇴직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가능</li> </ul>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5. 12)	근로기준국 퇴직연금 추진단 ☎(031) 425-276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6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신설〉	○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작성하고 이행토록 한 공정안전 보고서의 이행상태를 노동부에서 정기적(3년)으로 평가·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호 (2005. 7)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 ☎(02) 504-2052
7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사업장 처벌규정 변경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005. 7)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 ☎(02) 504-2052
8	취직인허증 발급대상 확대	○ 15세 미만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함	○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을 중학교 재학생인 모든 연소자(18세미만)로 확대	근로기준법 제62조 (2005. 7)	고용평등국 평등정책과 ☎(02) 503-974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9	취업규칙에 모성보호 추가	<신설>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근로기준법 제96조 (2005. 7)	고용평등국 평등정책과 ☎(02) 503-9746
10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포상금 지급)	<신설>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하여 1천만원한도내에서 포상금 지급 1. 부정수급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600만원+(부정수급액×3/100) 2.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부정 수급액×5/100) 3.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10/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의4 내지 제27조의 7 (2005. 7)	고용평등국 장애인고용과 ☎(02) 503-4367
11	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 포상제 도입	<신설>	○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거나 위탁받은 자의 부정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지급기준 : 최고 300만원, 최저 20만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2조 (2005. 7)	능력개발 심의관실 자격지원과 ☎(02) 503-975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2	현장요양·재활서비스 지원체계 도입	○ 현금 보상위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적정·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실제 요양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리 소홀 - 상병별 표준 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담당자의 의학적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현장 요양 서비스 부실	○ 재해발생시부터 요양, 재활, 사회복귀 등 단계별로 현장요양·재활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상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체장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직업·사회복귀 지원 -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하여 적정진료 유도 - 결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도덕적 해이 등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방지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 건실화 및 보험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2005. 10)	노동보험 심의관실 산재보험과 ☎(02) 503-9761
13	사업주훈련 최소훈련시간 요건 완화	○ 훈련과정 시간요건 : 3일 20시간	○ 훈련과정 시간요건 : 2일 16시간 (우선지원대상기업 : 8시간 이상)으로 완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시행령 제22조 (2005. 7)	능력개발 심의관실인적 자원개발과 ☎(02) 503-9759
14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요건 : 2주이상, 40시간 이상	○ 지원요건을 8일 이상, 16시간 이상으로 완화	고용보험 법시행규칙 제41조의2 (2005. 7)	능력개발심의관 실훈련정책과 ☎(02) 503-975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5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지정요건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관의 전년도 1년간 훈련 실시인원 및 국가위 탁훈련 실시률 (전체훈련인원의 50%)</li> <li>○ 소속근로자의 직업훈련 실시목적의 훈련 전용시설 확보</li> <li>○ 훈련직종에 대한 훈련기 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 추고 그 직종 훈련만을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있는 훈련교사 채용여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등)</li> <li>○ 훈련시설 지정신청자의 교육훈련 실시경력 (2년 이상)</li> <li>○ 훈련직종에 대한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구비</li> <li>○ 기타 훈련필요사항</li> </ul>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2005. 7)	능력개발 심의관실 인적 자원개발과 ☎(02) 503-9759

# 여 성 가 족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관리	○ 보육시설의 시설 장이 경력 관리	○ 종전 시설장이 행하던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관리를 시·군·구로 변경	영유아보육법 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005. 7. 31)	보육기획과 ☎ (02) 3703-2713

## 건 설 교 통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신설〉	○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3월이내 조치하지 않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직접 재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 (2005. 7.27)	도시관리과 ☎ (02) 2110-8167
2	국제선 항공운임 인가제도 개선	○ 제선 신고제노선에 대해서는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를 허용하였으나 ('05.4.15) 인가제노선에 대한 부과는 제한적	○ 국제선 인가제 노선에 대한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 전면 시행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임 산정시 유가증감분을 반영시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급등에 따른 국적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항공사와의 형평 유지	항공법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2005. 7)	국제항공과 ☎ (02) 2110-8270
3	국내선 기종변경 규제완화	○ 인기된 항공기의 좌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기를 받도록 함	○ 국내선 기종변경시 좌석수에 관계없이신고하도록 함 -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수요 및 기재사정에 따라 기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영자율성 제고	항공법시행규칙 제 290조제2항제1호 (2005. 7) ※ 2005. 7.1 공포예정	항공정책과 ☎ (02) 2110-825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운수에 관한 협정 인허가제도 개선	○ 국적항공사가 외국항공사와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 변경시는 신고	○ 운수에 관한 협정 신고사항의 범위 확대 - 운수에 관한 협정 변경시의 인가사항 중 신고로도 행정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 편명변경, 운항횟수 변경 및 운항지점 변경에 대한 사항	항공법시행규칙 제291조 (2005. 7) ※ 2005. 7.1 공포예정	국제항공과 ☎ (02) 2110-8270
5	비행계획서 제출 및 통지 방법 개선	○ 공기 입출항시 제출하는 비행계획서는 구술·서류·전화·전문으로 제한	○ 비행계획서의 신청 및 통지방법 모사전송 또는 전산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감소	항공법시행규칙 제209조제2항 (2005. 11) ※ 2005. 7.1 공포예정	항공정책과 ☎ (02) 2110-8250
6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개정>	○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심의를 강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안 제21조 제5항제4호 (2005. 7.1)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 (02) 2110-821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7	건설신기술의 시험시공 강화	<신설>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장관에게 통보하게 하므로써 건설공사 현장에 우수 건설신기술의 보급 및 확산이 기대됨	건설기술관리법시 행령안 제34조의2 (2005. 7.1)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 (02) 2110-8210
8	감리전문회사의 양도· 양수·합병 신고정치 및 실적승계 요건을 명시	<신설>	○ 법인간 양도·양수나 합병 신고서류 및 절차를 명시하고 감리실적 승계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감리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 유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제40조의4 (2005. 7.1)	기술안전국 건설안전과 ☎ (02) 2110-8214
9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	○ 입주 17~13월전(공정 40~60%)에 입주자 모집	○ 입주 12월전(공정 70%)에 입주자 모집 ※ 점차 입주 6월전(공정 80%)로 조정 예정	행정지시 (2005. 1.17), 시행일 (2005. 7.1)	주택기획과 ☎ (02) 504-7402
10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신설>	○ 효율적·체계적인 철도망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시행	철도건설법 제4조 (2005. 7.1)	일반철도과 ☎ (02) 2110-835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1	수익자·원인자 비용부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는 국가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li> <li>○ 국가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함</li> </ul>	철도건설법 제21조 제1항 (2005. 7. 1) 철도건설법 제21조 제3항 (2005. 7. 1)	일반철도과 ☎ (02) 2110-8359
12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운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한 철도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내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운영</li> <li>- 열차탈선·충돌·화재 사고 등 발생시 전담 사고조사관이 조사수행</li> </ul>	철도안전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53조 내지 제58조 및 시행규칙 (2005. 7)	철도국 철도안전과 ☎ (02) 2110-8255
13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계획을 수립</li> </ul>	철도안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시행규칙 (2005. 7)	철도국 철도안전과 ☎ (02) 2110-825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4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신설>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2년 단위로 철도서비스 품질를 시행하고 이를 공표	○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2005. 7.1)	철도운영과 ☎(02) 503-7330
15	철도운임·요금 제도 변경	○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요금을 인가	○ 철도운임·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2005. 7.1)	철도운영과 ☎(02) 503-7330

## 해 양 수 산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등 4가 지의 경우에 한하여 공유 수면 점·사용료 감면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의 설치와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 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공유수면관리법 (2005. 10)	연안계획과 ☎ (02) 3674-6574
2	어선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 25톤미만 어선은 선원법 적용제외	○ 25톤 이상 어선을 선원법 적용대상으로 하던 것을 20톤 이상까지 적용범위 확대	선원법 (2005. 10)	선원노정과 ☎ (02) 3674-6631
3	외국항만 출입 선원의 편의를 위한 선원신분 증명서제도 도입	<신설>	○ 외국의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선원은 선원신분증 명서 소지	선원법 (2005. 10)	선원노정과 ☎ (02) 3674-6631
4	선원에 대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 주 44시간 근로 및 주12 시간의 시간외근로를 명 할 수 있음	○ 주 40시간 근로 및 주 16시간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음 유급휴가 월 2일 확대	선원법 (2005. 10)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선원노정과 ☎ (02) 3674-663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인천항만 운영 민영화	○ 인천항만 운영을 국가에서 담당	○ 항만시설 관리·운영주체 변경(인천청→항만공사) ※ 단, 선원선박·해양환경·해상안전·수산관리 등은 국가에서 계속 수행  ○ 징수주체 별 항만시설사용료 - 국가 : 정박료, 수역점용료, 선박입출항료 - 항만공사 : 국가징수 사용료를 제외한 항만시설 사용료	항만공사법 (2005. 7)	항만물류과 ☎ (02) 3674-6661
6	선박 입출항 및 화물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 선박입출항 및 화물/컨테이너 반출입(적하목록) 신고시 해수부와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개별신고 처리	○ 선박입출항보고서 및 승객/선원명부 서식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 - 1회 제출로 해수부, 관세청, 법무부, 검역소 등 4개기관 공동활용  ○ 화물/컨테이너 반출입현황(해수부)과 적하목록(관세청) 서식통합 및 정보 공동활용 - 업체에서는 통합서식 1회만 제출	무역항의항만시설 사용및사용료에 관한 규정 (2005. 9)	항만물류과 ☎ (02) 3674-6664
7	일선수협 제도개선	○ 상임이사 : 자율적 도입  ○ 조합장연임 : 제한없음  ○ 조합장선거 : 자체선거 관리  ○ 외부회계감사 : 없음	○ 상임이사 : 도입의무  ○ 조합장 연임 : 1회연임  ○ 조합장 선거 : 선관위 위탁  ○ 외부회계감사 :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 조합에 도입	수협법 (2005. 7)	수산정책과 ☎ (02) 3674-681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8	지정해역 주변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신설>	○ 지정해역 주변해역의 오염행위에 대하여 처벌 - 고의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과실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동물용의약품사용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수산물품질관리법 (2005. 7)	품질위생팀 ☎ (02) 3674-6922
9	육상해수양식(종묘생산) 어업 허가제로 전환	○ 육상양식 및 육상종묘 생산어업, 신고제로 운영	○ 기존 허가어업인 해상종묘생산어업에 포함하여 육상 해수양식 및 육상 종묘생산어업도 허가제로 전환	수산업법 (2005. 7)	양식개발과 ☎ (02) 3674-6963
10	연안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 제한	○ 연안및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8톤~10톤까지(구획 어업 5톤) 자유롭게 증톤가능	○ 일정규모까지는 종전과 같이 증톤이 가능하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업종의 어선을 매입·폐선한 규모 만큼 증톤가능	수산업법 (2005. 7)	어업정책과 ☎ (02) 3674-6914
11	어획물운반업 등록 업무 이관	○ 시·도지사가 어획물 운반업 등록업무를 관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획물운반업 등록업무를 관장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2005. 7)	어업정책과 ☎ (02) 3674-691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2	기상악화시 출항 통제 대상선박 완화	○ 기상악화시 모든 선박(외항선 및 내항선)은 톤수에 따라 출항이 통제됨	○ 기상악화시 톤수에 따라 모든 내항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함선박에 대하여만 출항을 통제함(모든 외항선은 제외하여 자율적으로 출항 결정토록 함)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005. 8)	안전정책 담당관실 ☎ (02) 3674-6315
13	특정해역 운항 거대선 등의 통보 의무 일원화	○ 전국 5개 항만에 설정된 특정해역을 운항하는 거대선 및 위험물운반선은 관련법령에 의거 각각 해경서와 지방청 관제센터에 운항사항을 통보하여 왔음(이중통보)	○ 특정해역을 운항하는 거대선 등은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항사항을 통보한 경우에는 개항질서법에 의한 운항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의무 일원화(선박 → 지방청 관제센터 → 관제센터는 해경서와 정보 공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2005. 8)	안전정책 담당관실 ☎ (02) 3674-6315
14	거문도 복단 통항 분리 방식 채택·시행	<신설>	○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거문도 복단에 동서방향의 통항분리방식 시행 (동 수역 통과선박은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 의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2005. 8)	안전정책 담당관실 ☎ (02) 3674-6315
15	광양만 특정해역내 통항 분리방식 채택·시행	○ 깊은수심항로 시행	○ 깊은수심항로를 통항분리방식으로 변경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2005. 8)	안전정책 담당관실 ☎ (02) 3674-6315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과실손해 배상은 공정 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이후에만 재판상 주장 가능</li> <li>○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손 해액 입증 책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과 실손해배상을 재판상 주장가능. 다만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에는 면책됨</li> <li>○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나 변론의 전체취지를 감안하여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신설</li> </ul>	독점규제 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2005. 4.1)	심판관리 1담당관실 ☎ (02) 504-5143
2	지주회사 관련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 개정</li> <li>○ 신고양식 추가</li> <li>○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제출 자료에 주주현황 미포함</li> <li>○ 규정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관련손자 회사의 정의규정 등이 신설되어 '신고요령' 고시에 반영</li> <li>○ 타 법률에 의해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되었다가 이후 제외기간이 경과하여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의 신고양식을 추가로 마련</li> <li>○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제출자료에 주주현황을 추가</li> <li>○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보고시 자회사, 사업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신규로 편입되거나 정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관을 제출</li> </ul>	지주회사의설립· 전환의신고및지주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등의보고에 관한요령고시 (2005. 7.1)	독점정책과 ☎ (02) 503-912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3	경품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경품류가액 제공 한도는 거래가액의 10% 이내</li> <li>○ 소비자경품류 적용제외 한도 3,000원미만</li> <li>○ 소비자현상경품류 경품류가액 최고한도 100만원 이내</li> <li>○ 경품고시 적용배제 사업자 규모 제조업자 100억 원미만, 기타사업자 10억 원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 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거래가액의 20% 이내까지 가능</li> <li>○ 소비자경품류 적용제외 한도를 5,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li> <li>○ 소비자현상경품류 경품류가액 최고한도 5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li> <li>○ 경품고시 적용배제 사업자 규모를 제조업자 200억 원미만, 기타사업자 20억 원미만으로 상향조정</li> </ul>	경품류제공에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지정 고시 (2005. 7.1)	유통거래과 ☎ (02) 503-9511
4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은 특수한 판매기법을 가진 종업원만 파견가능</li> <li>○ TV홈쇼핑사업자의 서면 계약서 교부는 방송전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계약시 대규모소매점업과 납품업자간에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정하여 약정할 경우 반품허용</li> <li>○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 판매시 납품업체 종업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li> <li>○ TV홈쇼핑사업자의 현저한 시황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송 전까지 계약내용 변경가능</li> </ul>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및 기준고시 (2005. 7.1)	유통거래과 ☎ (02) 503-951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의무	<신설>	○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법정대리인 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제13조제3항 (2005. 7. 1)	전자거래 보호과 ☎ (02) 504-7331
6	청약철회제한사실 명기 의무의 강화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 한되는 사항 중 “소비자 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 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 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제한사실 의 명기가 있어야 소비 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됨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 제한사실의 명기가 있어야 청약철회가 제한됨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제17조제2항 (2005. 7.1)	전자거래 보호과 ☎ (02) 504-7331
7	할부거래 계약서 상의 법정기재사항 추가	○ 할부계약은 총리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철회권 과 행사방법 등 10가지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	○ 할부거래계약서에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항변권 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야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 (계약서의 작성방법) (2005. 10.1)	소비자기획과 ☎ (02) 504-416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8	하도급법 개정	<p>○ 건설 및 제조업분야에만 하도급법 적용</p> <p>○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는 행위 등 5개 유형</p>	<p>○ 서비스분야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 - 광고업, 디자인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제작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건물유지·관리업, 화물운송업 등</p> <p>〈구체적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방송프로그램제작업체에게 위탁</li> <li>• 대형광고대행사가 영상광고의 제작을 광고제작업체에게 위탁</li> </ul> <p>○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p> <p>○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간주유형 추가(2개)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 직접공사비 : (원도급내역)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5. 7.1)	공정위 하도급국 ☎ (02) 503-889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8	하도급법 개정	<p>○ 위탁시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등 5개 유형 예시</p> <p>〈신설〉</p>	<p>- 경쟁입찰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 부당 감액행위 간주유형 추가(3가지)</p> <p>-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p> <p>-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p> <p>-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p> <p>○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5. 7.1)	공정위 하도급국 ☎ (02) 503-8895

# 국 가 보 훈 처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 시행	○ 소방방재청장의 위임에 의한 동원	○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을 실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05. 7. 30)	심사정책과 ☎ (02) 2020-5165
2	참전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 6.25전쟁 전투지역 - 16개 지역  ○ 참전사실 확인기관 - 국방부장관  ○ 참전명예수당지급 기산일 - 지급신청월  ○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 유족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 50% 감면	○ 6.25전쟁 전투지역 추가 - 7개지역 (공군2, 해병대2, 경찰3)  ○ 참전사실 확인기관 추가 -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 참전명예수당지급 기산일 - 등록후 연령 도달월  ○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 유족,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 장제를 행한 자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 60% 감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5. 7. 1)	심사정책과 ☎ (02) 2020-5168  보상급여과 ☎ (02) 2020-5174  의료지원과 ☎ (02) 2020-528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3	영주귀국 독립 유공자유족 정착금 지급 대상자 확대	○ 유족중 1인에게만 지급 ○ 일정금액 6,000만원 지급	○ 유족 중 각 세대주에게 지급 (세대별로 확대) ○ 가족 수에 따라 4,500~7,00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2005. 6.1)	공훈심사과 ☎ (02) 2020-5232
4	노후복지사업 시범 실시	<신설>	○ 국가유공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보훈복지사(5명), 보훈도우미(100명)제도 도입 - 독거노인, 노인성 질환자 등에 가사·간병 서비스지원  ○ 요양성 환자 시설위탁보호 - 장기요양시설 위탁 - 주간보호시설 위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법률 제63조  보훈기금법 제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1조, 제63조  보훈기금법 제5조	복지기획과 ☎ (02) 2020-5262)
5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비율 상향 조정	50%	○ 감면비율을 60%로 상향 조정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 7.1)	의료지원과 ☎ (02) 2020-5284

## 국 세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증가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산정 시 고율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	○ 고율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국민주택규모일 것 - 5호이상으로 5년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 고율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대지면적이 298㎡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이하일 것 - 2호이상으로 5년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시행령제 167조의3 (2005. 5.31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부터 적용)	재산세과 ☎ (02) 397-1774
2	채권매도시의 원천징수 방법 변경	○ 의제원천징수제도 - 채권양도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 보유기간과세제도 - 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	소득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2005. 7)	원천세과 ☎ (02) 397-1846
3	금융기관에 대해 채권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 면제	○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다른 개인·법인과 동일하게 (의제)원천징수 적용	○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	법인세법 제73조 (2005. 7)	원천세과 ☎ (02) 397-1846
4	반기별 납부자 확대시행	○ 반기납부자 지정요건 - 상시 고용인원 10인이하 자중 일정규모 이하자	○ 반기납부자 지정요건 완화 - 상시 고용인원 10인이하자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6조 (2005. 7)	원천세과 ☎ (02) 397-1842



## 관 세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인터넷수출신고제도 확대	○ 비환급대상물품에 한정 인터넷수출신고	○ 환급대상물품도 제한없이 인터넷으로 수출신고 가능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2005. 7. 1)	통관기획과 ☎(042) 481-7841
2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품목의 조정	〈신설〉	○ 세관장확인 품목의 조정 - 버섯, 마늘 등은 식물방역법 대상에서 제외되고, 투구새우 등은 새로 추가 -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개정 사항 반영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의한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2005. 7)	통관기획과 ☎ (042) 481-7841
3	주요 공·항만 장치기간 단축	○ 장치기간 3개월	○ 주요 공·항만 적체해소를 통한 선진물류체제 정착을 위해 주요 공·항만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이 2개월로 단축 운영됨	보세화물장치기간 및체화관리에 관한규정 (2005. 6)	수출입 물류과 ☎ (042) 481-7826
4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 가능기간 10일  〈신설〉	○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 가능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7일로 단축)  ○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자의 수입은 상표심사 생략 ○ 통관보류물품에 대한 담보갱신·연장 안내제도 마련 ○ 통관보류물품을 통관허용시 이해관계인에게 통관 사실 통지 ○ 상표권 침해우려가 있는 공매물품 처리절차 마련 ○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상표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조사 및 처벌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2005. 7)	공정무역과 ☎ (042) 481-763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수량 과다 물품은 상용에 공할 것으로 보아 정식(EDI) 통관</li> <li>○ 큐리어: 일반여행자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품: US\$400</li> <li>- 주류: US\$400이하 1병</li> </ul> </li> <li>○ 항공기승무원 면세범위 (US\$60)</li> <li>○ 승무원 과세통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승무원: US\$20</li> <li>- 선박승무원: US\$60</li> </ul> </li> <li>○ 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 스업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및 과세범위 적용</li> </ul> </li> <li>〈신설〉</li> <li>○ 공산품 및 농산물 등 유치 된 상용물품에 대하여 유치 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정식 EDI 반송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과다하더라도 입국현장에서의 간이통관 허용</li> <li>○ 관광목적의 여행자에 해당되지 않은 큐리어의 면세 범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품: US\$100</li> <li>- 주류: US\$60이하 1병</li> <li>※ 항공기승무원 면세규정 준용</li> </ul> </li> <li>○ 항공기승무원 면세범위 상향(US\$100)</li> <li>○ 승무원 과세통관 범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 및 선박승무원: US\$400</li> </ul> </li> <li>○ 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무원과 동일한 면세 및 과세범위 적용</li> </ul> </li> <li>○ 개정교토협약의 비거주자 휴대품인정범위를 수용 하여 면세대상물품 명문화</li> <li>○ 부패우려가 있는 농산물, 식품 등에 대한 반송규제 (반송절차)는 폐지하고 공산품은 EDI 반송 신고 유지</li> </ul>	여행자및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고시 (2005. 6.2)	특수통관과 ☎ (042) 481-783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6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왕래자 1인당 면제 내역 관리 미비</li> <li>〈신설〉</li> <li>○ 왕래자 전원에 대해 X-ray 검색,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생략 및 간이검색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래자에 대한 1인당 면제내역 관리절차 신설</li> <li>○ 재반입할 귀중품(직업용품), 반출수리물품 등에 대해서는 1회 신고만으로 평생 반출입 가능</li> <li>○ 단체관광객, 학생 등에 대해 세관장이 판단하여 검색생략 및 간이검색 등 탄력적 운영(대상 확대)</li> </ul>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2005. 6.8)	특수통관과 ☎ (042) 481-7832
7	특송물품 통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송물품 통관장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li> <li>- X-Ray 투시기만 설치하면 통관장 지정</li> <li>○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 물품</li> <li>○ 체납 익일까지 납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송물품은 원칙적으로 X-Ray투시기가 설치된 지정정장치장에 반입</li> <li>다만, 자체 창고를 운영하는 특송업체가 X-Ray 투시기 설치 및 전담 관독요원(2명) 등을 확보하는 경우 자체 시설에 특송물품 반입 가능</li> <li>○ 특송업체 납세보증에 의한 선반출후 세금납부 대상물품을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물품에서 재수출조건면세물품까지 확대</li> <li>○ 특송업체의 체납액 납부기한을 체납 익일에서 체납후 10일까지 연장</li> </ul>	특송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2005. 7)	특수통관과 ☎ (042) 481-783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에 대한 납세고지서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	<신설>	○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 - 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 의무화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2005. 7월초)	심사환급과 ☎ (042) 481-7986
9	불복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	○ 상위의 불복청구만 제기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	○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의 처리 - 세관장의 불복청구 중복제기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화 - 동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을 문서로서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 - 상위의 불복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하위의 불복청구를 심리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2005. 7월초)	심사환급과 ☎ (042) 481-7986
10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을 고시에 반영	<신설>	○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 관세사 1인, 변호사 1인, 대학교수 및 수출입업 체 대표 2인(세관 형편에 따라 관세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심의 위원회 위원 겸직 가능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2005. 7월초)	심사환급과 ☎ (042) 481-7986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에 대한 결정 지연사유 통지	<신설>	○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2005. 7월초)	심사환급과 ☎ (042) 481-798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2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	○ 종전 관세환급신청은 EDI 단일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인터넷 관세환급신청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05.7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05.10월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를 전면실시 예정 - 환급신청인은 종전 EDI방식과 인터넷방식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가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05. 10)	심사환급과 ☎ (042) 481-7884

## 조 달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	○ 물품구매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심사는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	○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만 평가 -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평가등급 관련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여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2005. 7.1)	구매제도과 ☎ (042) 481-7212
2	부도업체 입찰참가자격 개정	○ 부도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다만,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 부도업체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화의 개시 결정시 입찰참가자격 부여 -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서발급 가능 확인서 제출 생략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 특별유의서 (2005. 6.13)	계약과 ☎ (042) 481-7342
3	조달청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기준만 적용	○ ‘04.10월 규정개정을 하였으나, 제도의 변화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 기준과 개정기준 중 업체가 선택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	○ ‘05년 7월부터 개정기준인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계약과-1740, 2004. 9.30) 적용	조달청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2005. 7.1)	계약과 ☎ (042) 481-734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기업신용평가 기관의 범위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신용평가는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 기금이 평가한 자료를 적용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신용평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li> </ul>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2005. 6.23)	계약과 ☎ (042) 481-7342
5	조달청 일괄·대안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가 자료제공하고 그에 따라 설계하도록 한 경우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음</li> <li>○ 실시설계 부적격판정을 받고 보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li> <li>○ 설계비 보상기준은 공사 예산액에서 관급자재금액 제외</li> <li>○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음</li> <li>○ 설계서에 현장설명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음</li> <li>○ 실시설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하여 제출케하고, 보완제출 실시설계도서가 부적격 된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부도 등에 준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함</li> <li>○ 설계비 보상기준은 공사예산액(관급포함)으로 함</li> <li>○ 삭제</li> <li>○ 설계서에 현장설명서 포함</li> </ul>	조달청일괄·대안 공사입찰특별유의서 (2005. 7월중)	계약과 ☎ (042) 481-7342

## 병 무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의무병 지원자격 확대	○ 대학 해당 전공학과 1년 이상 수료자	○ 고졸자로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까지 확대	병무청 육군병 모집예규 (2005. 7. 1)	모병과 ☎ (042) 481-2745
2	귀국보증제도 폐지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시 귀국보증인 선정, 미귀국시 귀국보증인에게 과태료 부과	○ '05. 7. 1부터 국외여행 허가시 귀국보증서 미제출	병역법제 70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2005. 7. 1)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54
3	인터넷 국외여행 허가	○ 지방병무청 방문 허가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 (기간연장허가 제외)	병역법제 70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2005. 7. 1)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54
	단기국외여행 허가개선으로 복수여권 발급	○ 단기 국외여행 5개월 허가	○ 단기국외여행 허가 1년 범위내에서 허가 - 대상 : 제1국민역, 공익근무소집대상	병역법제 70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2005. 7. 1)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54
	인천공항병무신고 사무소 국외여행 허가/허가기간 조정 권한부여	○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 기간 10일 이내에 미리 출국을 원할 경우	○ 인천공항병무신고 사무소에 허가/허가기간 조정권 부여	병역법제 70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2005. 7. 1)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54
	국외여행 허가 처리부서 확대	○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처리 (단기국회 여행은 제외)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제출하는 지방병무청 어디에서든 허가 처리	병역법제 70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2005. 7. 1)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5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전가족 국외 영주권 취득자 병역처분 조정	○ 전가족 국외영주권 취득자 병역면제 처분	○ 전가족 국외영주권 취득자 병역면제 제도 폐지 (병역연기로 전환)	병역법 제64조 제1항제2호 삭제 (2005. 7. 1)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54
5	국적회복자 입영의무 면제연령 조정	○ 31세에 입영의무 면제	○ 36세에 입영의무 면제	병역법 제71조 (2005. 7. 1)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54
6	국적회복자 입영의무 면제연령 조정	○ 국내 1년이상 체재시 의무부과	○ 국내 연간 통산 6월 이상 체재시 의무부과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2005. 7. 1)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54
7	재외국민2세 의무부과 규정 명확화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 해외이주법에 의한 영주 귀국신고자, 국외출생자 로서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2005. 7. 1)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54
8	국외이주자중 의무부과 대상자 3개월간 의무부과 유예	○ 의무부과 대상자에 대하 여는 즉시 의무부과 유예	○ 의무부과 대상자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3월이내 출국시 의무부과 유예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2005. 7. 1)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54
9	군복무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자 가족의 범위 조정	○ 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 비속 및 형제자매	○ 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및 직계 비속 (형제자매 제외)	병역법시행령 제131조제2호 (2005. 7. 1)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5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0	개인별 특성을 고려 공익근무요원 소집	<신설>	○ 공익근무요원의 개인별 질병 등 특성을 고려 복무 기관 배정 - 기관지천식, 척추질환 등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으로 처분된 사람이 복무가 곤란한 기관 배정 제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등 자원 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제16조 (2005. 7)	소집과 ☎ (042) 481-2766
11	병역증·전역증 재교부 및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	○ 병역증·전역증 재교부 : 1매에 500원  ○ 병적증명서 : 1통에 200원	○ 수수료 폐지	병역법시행령 제16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 (2005. 7)	소집과 ☎ (042) 481-2766
12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자 금융자산 확인을 전 은행권을 통해 일괄 조회	○ 금융자산은 신고한 은행만 확인	○ 국민은행, 우체국 등 19개 전 은행권 일괄조회	병역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2005. 7)	소집과 ☎ (042) 481-2766
13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 단축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4년	○ '05. 7. 1일부터 편입하는 전문연구 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 - 기존 복무자에 대하여는 잔여기간의 25%씩 단축	병역법 제39조 (2005. 7)	산업지원과 ☎ (042) 481-2813

## 기 상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태풍특보기준 세분화	○ 태풍특보를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로 운영	○ 태풍특보 중 태풍경보는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각각 3단계로 세분하여 발표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3 급</th> <th>2 급</th> <th>1 급</th> </tr> </thead> <tbody> <tr> <td>바람(m/s)</td> <td>17~24</td> <td>25~32</td> <td>33 이상</td> </tr> <tr> <td>비(mm)</td> <td>100~249</td> <td>250~399</td> <td>400 이상</td> </tr> </tbody> </table>		3 급	2 급	1 급	바람(m/s)	17~24	25~32	33 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 이상	예보업무규정 (2005. 5.15)	예보관리과 ☎ (02) 836-3156
	3 급	2 급	1 급														
바람(m/s)	17~24	25~32	33 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 이상														

## 문 화 재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졸업예정자 포함)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전부 면제	○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졸업예정자포함)에게 주어지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면제규정을 삭제 다만, 동규정 개정전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전부면제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2005. 7)	문화재정책과 ☎ (042) 481-4821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무 시·도 이양	○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 수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 수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다만, 수리기술자가 수리업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 영업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6 (2005. 7)	문화재정책과 ☎ (042) 481-4821
3	수리업자 처분후의 기체결 도급계약 계속 시공 인정	〈신설〉	○ 수리업자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은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2 (2005. 7)	문화재정책과 ☎ (042) 481-4821
4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	〈신설〉	○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67조 (2005. 7.28 시행)	동산문화재과 재정기획관실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5	일반동산문화재 국외반출기간 연장	○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기간은 최초 2년, 연장 2년	○ 국외반출기간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확대	문화재보호법 제76조 (2005. 7.28 시행)	동산문화재과 재정기획관실
6	문화재 등록 범위 확대	○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대상 시설물·건조 물 중 50년이 경과한 것	○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등록대상이 시설물·건조물 에서 역사유적지, 생활문화자산, 동산문화재 등 으로 확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동법시행 규칙제35조의2	근대문화재과 ☎ (042) 481-4882
7	인센티브를 받은 등록 문화재에 대한 현상 변경허가 도입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시 신고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시 신고사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다만 보조금, 건축기준 완화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은 등록문화재에 한하여 현상변경허가 적용대상이 됨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4 동법시행 제28조의3	근대문화재과 ☎ (042) 481-4882
8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반영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5 동법시행령 제 28조의3	근대문화재과 ☎ (042) 481-4882

## 산 림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수목원조성및진흥에 관한법률 제8조의2 (2005. 7)	산림보호과 ☎ (042) 481-4248
2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	〈신설〉	○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고,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도 국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음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2005. 7)	산림보호과 ☎ (042) 481-4248
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 확대	○ 배치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 배치권자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추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관한법률 제2조 (2005. 7)	산림보호과 ☎ (042) 481-424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임산물 품질인증 제도 개선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 접수, 인증</li> <li>○ 국립산림과학원 : 시험, 사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li> <li>○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일원화</li> </ul>	<p>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5. 7)</p> <p>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2005. 7)</p>	<p>임산물이용과 ☎ (042) 481-4206</p>
5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독립가 : 20ha이상</li> <li>○ 법인독립가 : 500ha이상</li> <li>○ 임업후계자 : 5ha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독립가 : 15ha 이상</li> <li>○ 법인독립가 : 400ha 이상</li> <li>○ 임업후계자 : 3ha 이상</li> </ul>	<p>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005. 7)</p>	<p>경영지원과 ☎ (042) 481-4191</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강화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 재선충병 구제·예방을 위한 산림소유자 의무부과 -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림소유자가 구제·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p> <p>○ 중앙 및 지역방제대책본부 구성·운영 - 산림청장은 중앙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산림관리청장·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p> <p>○ 재선충병 발견 신고포상금 지급 -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규 발생지역일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p> <p>○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임목의 벌채명령이나 양도·이동 금지 등의 방제조치</p>	<p>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 (2005. 9)</p> <p>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5조 (2005. 9)</p> <p>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 (2005. 9)</p> <p>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2005. 9)</p>	<p>산림보호 지원팀 ☎ (042) 481-4077</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강화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 피해지역에 대한 반출금지구역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에 대하여 읍·면·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p> <p>○ 감염목의 이동·판매·이용 제한 - 감염된 입목·원목은 이동·판매·이용이 금지됨</p> <p>○ 피해지역의 소나무류 조림·육림 금지 - 피해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 -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 벌채지에 의무적으로 조림 실시 (소나무류 이외 수종)</p>	<p>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9조 (2005. 9)</p> <p>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 (2005. 9)</p> <p>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2조 (2005. 9)</p>	<p>산림보호 지원팀 ☎ (042) 481-4077</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7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역주민 지원강화	<p>○ 보호지역 안에서의 허용 행위</p> <p>〈핵심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두막, 비닐하우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의 설치</li> </ul> <p>〈완충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설</li> </ul> <p>○ 보호지역 안의 토지매수</p>	<p>○ 보호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확대</p> <p>〈핵심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li> </ul> <p>〈완충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석회석의 노천채광</li> <li>-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시설의 설치</li> <li>-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 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단, 산지 외의 토지에 한함)</li> </ul> <p>○ 보호지역 안의 토지매수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 밖의 토지매수 가능</p>	<p>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2005. 12)</p> <p>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 (2005. 12)</p>	<p>백두대간 보전과 ☎ (042) 481-4295</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7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역주민 지원강화	<신설>	○ 보호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 가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2 (2005. 12)	백두대간 보전과 ☎ (042) 481-4295
		<신설>	○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강화 -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 등 소득 증대사업 지원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원 - 백두대간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별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의 소득 감소분 지원 등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2 (2005. 12)	백두대간 보전과 ☎ (042) 481-4299

## 중 소 기 업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구매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인증제품, 특허 등 기술개발제품</li> </ul> </li> <li>○ 우선구매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등록)일로부터 2년이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구매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능인증제품, S/W인증제품, 단체표준인증제품 등 추가</li> </ul> </li> <li>○ 우선구매 지원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추천일부터 3년이내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기간 고려)</li> </ul> </li> <li>○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구매 대상제품 선정 추천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li> </ul> </li> <li>○ 성능인증, 성능보험제도 신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능보험가입제품에 대한 제한·지명경쟁입찰 우선참가자격 부여</li> <li>- 성능보험가입제품 구매시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li> </ul> </li> </ul>	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시행세칙 (중기청 고시) (2005. 7)	판로지원과 ☎ (042) 481-4466
2	창투사·창투조합 경영 지배목적 투자허용	○ 일시적 경영지배에 한하여 조건부 허용	○ 창투사·창투조합이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2005. 하반기)	벤처진흥과 ☎ (042) 481-4419

## 특 허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	<신설>	○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보호 - 다만,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디자인보호법 (2005. 7.1)	상표디자인 심사정책과 ☎ (042) 481-5268
2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	○ 종전에는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	○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라 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 록을 받을 수 있음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함	상표법 (2005. 7.1)	산업재산 진흥과 ☎ (042) 481-8180
3	최빈국 등 의약품 지원을 위한 강제실시제도 도입	<신설>	○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	특허법 (2005. 12.1)	산업재산 진흥과 ☎ (042) 481-818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4	실시중인 특허권 등의 권리회복 제도 도입	<신설>	○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등이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특허권 등이 소멸된 경우에 추가 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를 회복	특허법 (2005. 9.1)	등록서비스 담당관실 ☎ (042) 481-5233
5	특허등록 재신청 제도 도입 등 등록 절차 간소화	○ 종전에는 서류반환 요청을 하여 일체 서류를 돌려 받은 후 다시 작성하여 재신청함	○ 불수리 이유를 통지받은 등록재신청시 흡결서류만을 보완하여 신청토록 함 ○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이전등록신청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변경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특허등록령 (2005. 7.1)	등록서비스 담당관실 ☎ (042) 481-5233
6	지방세 특별징수 제도도입	<신설>	○ 상표권 설정등록,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등록시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던 등록세를 특허청장이 등록수수료와 함께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	지방세법 (2005. 7.1)	등록서비스 담당관실 ☎ (042) 481-523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7	국어번역문 제출 의무 면제	○ 종전에는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시 국어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어번역문 제출을 요청	특허법시행규칙 (2006. 1.1)	특허심사 정책과 ☎ (042) 481-5399
8	수수료 감면·보정절차 간소화	○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 건마다 동일한 감면 입증서류를 제출  ○ 종전에는 수수료만을 보정하는 경우에도 민원인이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	○ 감면사유의 변동이 거의 없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이미 특허청장에게 감면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감면 입증서류의 제출 생략  ○ 수수료만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서 제출없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당해 수수료를 납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2005. 12.1)	정보개발 담당관실 ☎ (042) 481-5094  재정기획관실 ☎ (042) 481-5046
9	설정특허(등록)료 등 납부방법의 추가	○ 종전에는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하기 위해 설정특허(등록)료 납부서를 제출한 후 특허(등록)료를 납부	○ 별도의 설정특허(등록)료 납부서 제출없이 특허(등록)결정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정상납부기간내에 특허(등록)료를 납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2005. 7.1)	등록서비스담 당관실 ☎ (042) 481-5233  재정기획관실 ☎ (042) 481-5046

2005년 7월부터

##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발행일 : 2005. 7.

발행처 : 재정경제부 교육홍보팀  
(T.02-2110-2338)

인쇄제작 : 애드컴서울  
(T.02-2285-6601)

---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 책자는 2005년 7월 이후 시행되는 부처별 제도 및 법규 개선사항을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교육홍보팀 (Tel : 02-2110-2338)